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충북 청주 소(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됩니다.
2. '23.5.10일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되어, 관련부처 협조사항 및 관계기관(단체)별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발생농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소(한우) 농장(농장주 : 김0권, 이0호)

### 나. 구제역 위기단계 격상

- 발령내용 : (당초) 관심단계 → (조정) 주의단계
- 발령일시 : '23.5.10. 24시
- 방역조치(협조) 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상의 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붙임2 참조)
  - 구제역 주의단계 조정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요청(붙임3 참조)

### 다. 충청북도 및 청주시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별 주요 거점소독 장소 운영
-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실시
  -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살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동물의 안락사 후 사체는 친환경적 처리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이동 금지,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출입통제
- 청주시 우제류 농가는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제한 실시

- 가축 및 생산물을 농장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타 농장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 부득이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중 II.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의 7. 지정도축장 지정 및 도축장 검사요령”에 따름
- 이동제한 농가의 축산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제한
  - \* 부득이하게 농장에 출입해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소독실시 후 소독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
- 발생농장주의 타 소유농장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임상예찰, 소독, 백신접종 실시여부 등 확인 철저
-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이행여부 점검 철저(주요 지점에 통제초소 설치)
-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세종, 대전,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 긴급 백신접종 명령 및 백신접종 완료 여부 확인(5.12일까지)**
  - 직전 접종 후 3주가 경과한 개체는 즉시 접종, 3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신속히 접종
  - 접종 확인방법 : 담당공무원은 해당 농장들이 백신접종 실시여부에 대해 공병 등 반드시 확인
  - 조치방법 : 해당 시군에서는 긴급백신접종 명령 불이행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미접종 개체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이동제한 농가에서 도축출하 전 임상검사 및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이동제한 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 시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 및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차량(가축분뇨 운송, 가축운반, 사료운반)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필증 발급 등 방역조치
  -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
  - 대상차량 : 가축운송차량, 가축분뇨 운반차량, 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전체
    - \* 관내 축산차량(가축분뇨 운송, 가축운반, 사료운반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붙임의 축산차량 방역관리 방안 주요 내용을 SMS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보
- **청주시 및 인접 7개 시·군 우제류 농장의 임상검사(5.12일까지 완료) 실시 및 농장·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 임상검사 시 특이사항이 확인 된 경우 정밀검사(항원, NSP, SP) 실시
  - 농가 입구 및 농가 내·외부, 주변 도로에는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
- 주변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확인지역 및 인접 시·군 경계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 함께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하여 방역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발생농장 방역조치 관계자(살처분·소독·분변처리 등)에 대한 개인방역 준수 철저
  - 방역복·덧신 착용 준수, 작업 후 목욕, 최소 7일간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 금지 등
- 살처분 후 소독·구서작업 및 살처분 관련 장비와 차량의 세척·소독 철저
-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 방역조치에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 및 장비(제독차량 등) 필요 시 관련기관 협조 요청
- 역학관련 및 관내 축산차량(분뇨, 사료, 가축운송)에 대한 소독 등 집중관리
  - (외부) 해당 차량 바퀴 등 (내부) 운전석·조수석 등
  - 관내 전체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
- 관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농가별 백신접종 실시여부 일제 점검
  - 백신접종 누락 및 미흡 농가 확인 시 접종 실시
- 관내 도축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 라. 전국 지자체(공통 방역조치)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관내 도축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 발생지역 인접 시·군은(세종, 대전, 천안)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실시(5.12일 까지)
  - 직전 접종 후 3주가 경과한 개체는 즉시 접종, 3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신속히 접종
  - 접종 확인방법 : 담당공무원은 해당 농장들이 백신접종 실시여부에 대해 공병회수 등 반드시 확인
  - 조치방법 : 해당 시군에서는 긴급백신접종 명령 불이행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미접종 개체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임상검사 시 특이사항이 확인 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항원, NSP, SP) 실시
- 나머지전국 시·군은 관내 우제류 농장 대상 전화예찰 실시(5.12일 까지)
-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등 활용)
- 전국 모든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
  - 도축장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축산차량의 GPS 부착 및 운영여부 확인 등 점검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을 미흡,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마. 농림축산검역본부

-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방역팀 파견을 통한 방역관리 추진
  - 특별방역팀을 파견하여 이동제한 준수 여부, 소독시설 운영 실태, 우제류 사육농가로 확산 방지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이행사항 점검·지도
- 중앙역학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
  -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즉시 농식품부 보고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역학관련 차량 및 관내 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송)에 대한 운행 사항 분석을 통해 위험농가 및 시설을 선별하여 중점 방역 관리
- 초동대응팀 파견 및 지속적인 방역기술 지원
- 전국 우제류 농장에 SMS 문자 발송을 통한 상황 전파

#### 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방역팀 근무 철저
- 전국(청주 및 인접 7개 시·군 제외) 우제류 사육 농가 대상 전화예찰 실시 (5.12일까지)

#### 사. 관련단체(협회)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해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 철저
-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지도·교육 철저
  - 발생지역 모임(행사) 금지 및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 준수 사항 홍보(SMS 등 활용)

#### 아. 관련부처 협조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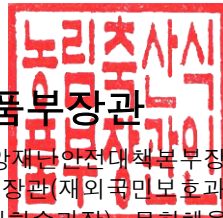
으로부터 이동통제, 인력동원 등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

자. 공통 사항

- 기타 방역조치 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SOP”에 따라 조치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구제역 발생농장의 이동제한(농장주, 종사자, 가축, 차량 등) 및 사후관리 철저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교육 강화
  - 백신접종, 소독, 의심축 확인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 붙임 1. 위기상황판단 보고서 1부
2. 구제역 주의단계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1부
3. 구제역 주의단계 관련부처별 협조사항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기획재정부장관(농림해양예산과장), 외교부장관(재외국민보호과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관세청장(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통정책과장),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지원과장, 축산유통팀장, 동물복지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수의사회, (사)한국축염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주무관 이수범 사무관 조동호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3. 5. 11. 장 김정주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3299 (2023. 5. 1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33 팩스번호 044-868-0469 / lsb7937@mail.go.kr / 대국민 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